

영국판례

신문발행인이 그 고용언론인에 의하여 게재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인쇄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REGINALD AUSTIN v. MIRROR NEWSPAPERS LTD.

(1985.Oct 8, 9 Nov. 4 추밀원 판결)

사실개요

원고는 New South Wales 의 한 프로 럭비리그팀의 「트레이너」 이고, 피고는 「Daily Mirror」 라는 약 353,000 부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또한 Mr. Ronald Arthur Casey 는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신문의 「Casey's Corner」 로 알려져 있는 칼럼란에 정기적으로 투고하고 있는 언론인이다. 그런데 피고는 1981. 4. 27.자 신문에 Mr. Casey 에 의하여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너무 심하게 다룬다』 「저명한 럭비리그를 위하여는 좋은 해가 아니었다. 그 경기내용을 보건대 거기에는 틀림없이 게임에 대비하여 훌륭한 선수들을 연습시킴에 있어 근본적인 잘못이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리그의 가장 훌륭한 팀들은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80 분의 격렬한 경기에 임하기 위하여는 3 일 밤의 고통스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믿게끔 속인 지나치게 열심히 연습지도원들에 의하여 단련을 받고 있다. 그 선수들은 일주일에 나흘 밤 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러한 사태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 리그의 하나인 Manly 팀은 지난 3 년간 광신자와 같은 원고에 의하여 육체적인 단체훈련을 받아오고 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박해는 그로 하여금 비교적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배 중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Manly 팀의 훈련을 담당한 후부터는 위 팀은 전의 챔피언의 관록은 사라지고 기록은 형편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국제적인 럭비선수는 특별한 고행으로서 400 미터의 달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원고의 지론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팀의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너무 심한 연습을 받는다. 문제는 원고나 그 소속회사가 그들은 옳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에 있다. 나는 Austin(원고)등을 해고할 것을 충고한다.」 원고는, 이 기사는, 「(1) 원고가 실시한 Manly 럭비리그 팀의 육체적인 훈련과 연습은 잘못되고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훈련지도자로서의 직책을 보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원고는 위 팀의 경기지도자로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여 1974 년도 Defamation Act 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 1 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항변을 제출하였다. 5 일간에 걸친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판사에 의하여 그들에게 회부된 질문들에 대한 답신을 통하여 판사에게 보유된 위 법 section 23 에 의한 면책특권의 항변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항변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60,000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배심원들로부터 위 평결을 받은 후, 제 1 심 판사는 피고의 위 면책특권의 항변을

인용하여 1983.3.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 1 심 판사는 위 section 23 에 의한 면책특권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의 기사는 대부분 실체적으로 진실인 사실들에 바탕을 둔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배심원들의 판단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4. 8.23. 항소기각 되어 추밀원에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함에 이르렀다.

판결이유

GRIFFITHS 대법부의 견해 이 사건에서 쟁점은 section 22 에 의한 면책특권의 항변인데, 위 조항의 (1)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어느 사람에게 사건이 공표된 경우에 관해서- (a) 그 수령인이 관심(an interest)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주제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b) 그 사건은 그 수령인에게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공표되었고, (c) 그 발행자가 그 사건을 공표함에 있어서 주위환경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표에 대하여는 위 면책특권의 항변이 성립한다. 우선 위 조항의 해석문제로서는 「an interest」라는 말을 좁게도 또는 넓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좁은 해석은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 면책특권의 항변의 요소를 이루는 interest 의 해석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의 수령자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수령자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급심 판사는 이와 같은 좁은 해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신문의 독자는 어느 사안이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의 넓은 해석을 취하고 있다. 생각컨대 section 22 에 의한 면책특권의 항변은 보통법에 의한 그 항변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일간지의 구독자들은 이 사건 럭비팀의 선수들에 대한 훈련상황에 대하여 위 section 22 (1) (a)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하급심 판사들의 위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Section 22 (1) (a) (b)에서 말하는 정보가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제공되었느냐의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논평이나 해설 등과는 구별되는 뉴스나 현지보고 따위에 포함된 사실들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라는 말이 그와 같은 인위적으로 제한된 뜻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라는 말 자체는 그 통상적인 용법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의 양자를 포함하고, 실제로도 신문독자층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서는 사실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바탕을 둔 의견의 경우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가 논평으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기사는 section 22 (1) (a), (b)에서 말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프로럭비 팀의 선수훈련이라고 하는 신문의 독자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공표된 것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항소심이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함에 있어 취한 행동이 제반 상황에 비추어 section 22 (1) (c)에서 말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점이다. 발행자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의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발생을 둘러싼 제반사정과 발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나 경위 등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반화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정당한 논평」의 항변을 그것이 바탕을 둔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한 사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배심원들이 허위라고 판단한 그 사실들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진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적인 논평을 게재하여 널리 발행한 신문에 있어서는 판사로 하여금 그 신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사건 하급심 판사들이 봉착한 어려움의 하나는 그 배심원들의 답신으로부터 그 기사의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논평부분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의 요점은 원고가 선수들을 지나치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점, 즉 일주일에 세 번은 그 선수들을 탈진의 상태로까지 훈련을 시켰다는 점에 있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문제의 기사에서처럼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반면에 주말경기를 위하여 일주일에 3 번 정도 연습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기사와 같은 공격은 근거 없는 비방이 될 것이다. 기사의 집필자인 Mr. Casey 도 자인하였듯이 위 기사는 원고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훈련방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만약에 피고신문사가 그 기사를 발행함에 의하여 그러한 공격을 하려고 결정하였다면 피고는 그 집필기자가 바른 사실 아래 그 기사를 쓴 한에 있어서만 「정당한 논평」의 항변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기초사실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항변이 실패한다면 이 기사를 공표함에 있어서 발행자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합리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항소심은 원고에 의하여 사용된 훈련방법의 조사를 위하여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인 것 같지 않다. 즉, 항소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Mr. Casey 는 문제의 사실들을 다른 신문에 게재된 Miss Goodwin 이라는 사람의 기사로부터 인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인용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Mr. Casey 가 자기가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합리성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가 피고가 신뢰할 수 있는 노련한 기자라는 사실은 역시 위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회사 대표인 발행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임무를 그의 피용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기사를 공표함에 있어서 합리성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는 피고회사는 Mr. Casey 에 의존하고 있었음도 명백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Mr. Casey 의 기사가 기초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그가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면 신문의 발행자가 그 기사를 발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문사를 그의 피용자인 언론인의 입장에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사는 그의 피용자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처럼 부주의할 줄은 미처 몰랐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원고의 훈련방법을 전적으로 허위로 묘사하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이처럼 적의에 찬 격렬한 어조로 원고를 비방한 기사를 쓰고, 나아가 이를 그의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발행하게 한 Mr. Casey 의 행동은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대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언론인이 그와 같이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손상을 주는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기초사실만큼은 진실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공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언론매체는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신문들이 면책특권의 항변 아래서 비록 무질서한 기사라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판사는 「정당한 논평」의 항변이 그 기초사실이 허위임이 판명되어 배척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 그 기사를 공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공표 내지 발행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추밀원은 하급심이 한 section 22(1) (c)에 의한 합리성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은 그 하급심이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밀원은 위 합리성 판단의 당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 이유는 항소심은 이 사건의 제반 사정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 즉 어떻게 Mr. Casey 는 원고의 훈련방법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결코 고려를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된 정보원은 Miss Goodwin 의 기사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잘못 인용된 것이었다. 그 밖의 정보원은 Mr. Casey 가 직접 시청한 경기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에 불과하고 이의 감상을 통해서 그는 막연히 위 선수들이 지나친 훈련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 몹시 지쳐있으리라는 인상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인상에서 근거하여 형성된 추측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손쉬운 방법, 예컨대 직접 원고에게 묻든가 선수들을 면담하든가 또는 훈련장면을 직접 관찰하기 위하여 그 참관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의 추측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유해한 논평을 거리낌없이 하였던 것이다. 물론 모든 합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기초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중은 적어도 기자가 신문지상에 어느 사람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그 기사를 쓰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수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합리적인 주의도 취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문사의 면책특권의 항변을 인용함에 있어서 매우 인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반공중은 무책임한 언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추밀원은 Mr. Casey 가 이 사건 기사를 씀에 있어서 그 기초사실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발행자인 피고는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피고의 section 22 (1) (c)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상고를 인용하여 제 1 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송비용과 함께 60,000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